

(16時 0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內務委員會 慶奎福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奎福議員 內務委員會 所屬 新韓國黨 慶奎福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3月 23日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면, 現行 條例는 서울特別市 自體監査의 公正性和 專門性を 補完하고, 監査行政에 市民의 參與를 誘導하며, 信賴行政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6年 1月 15日 條例第3256號로 現行 條例를 制定하였고, 條例는 11個 條項,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第7條 第1項에는 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監査1擔當官이 된 다라고 規定하고 있는 것을 1996年 1月 15日에 서울特別市の 組織을 大體적으로 改編하여 規則 第2726號로 서울特別市職制規則을 改正하므로 職制改編에 따라 職名이 改正 變更 되었으므로, 現行 條例 中에 변경된 職制의 職名대로 監査1擔當官을 監査擔當官으로 改正 하였으며,

다음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1993年 9月 6日 條例 第3021號로 制定, 1995年 6月 10日 第1次 改正을 거친 條例로서 18個 條項, 附則으로 構成되어 있습니다.

現行 條例 第15條에는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고 事實調査 등을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와 事務職을 둘 수 있도록 規定하고, 그 幹事와 事務職員이 任命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他部署 公務員으로 任命하여 그 業務를 수행하게 하면 責任性 確保나 非能率性이 예상되므로 總務處, 國會事務處, 選舉管理委員會 및 釜山廣域市와 같이 幹事는 그 業務의 擔

當部署인 監査室長을 當연직으로 하고, 事務職員은 監査室 所屬職員 中에서 市長이 任命토록 하여 他部處와 行평을 유지하고, 業務處理에 대한 責任性을 確保하기 위해 當연직으로 改正하여 合理的 運營을 도모하고자 1996年 3月 23日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監査室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및 심도 있는 質疑와 討論過程을 통하여 두 條例案을 改正하고자 하는 이유가 妥當하다고 判斷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 다.

議員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內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감사1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서울특별시 감사실장으 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소속 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